###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



[시행 2024. 8. 7.] [대통령령 제34783호, 2024. 7. 30., 일부개정]

국민권익위원회 (보호보상정책과) 044-200-7753

#### 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** 삭제 <2016. 1. 22.>

- 제3조(행정처분의 범위)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호나목에서 "인허가의 취소처분,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말한다. <개정 2016. 1. 22.>
  - 1.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검정 인증 확인 증명 등록 등을 취소 철회하거나 말소하는 처분
  - 2. 영업 업무 효력 자격 등을 정지하는 처분
  - 3. 시정명령, 시설개수명령, 이전명령, 폐쇄명령, 철거명령, 위반사실 공표명령 등 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위를 명하는 처분
  - 4. 과징금, 과태료 등 위반사실을 이유로 금전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
- **제3조의2(내부 공익신고자의 범위)** 법 제2조제7호다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<개정 2018. 10. 30., 2021. 12. 28.>
  - 1. 피신고자인 공공기관, 기업, 법인,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기 전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, 기업, 법인, 단체 등에 서 직무교육 또는 현장실습 등 교육 또는 훈련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자
  - 2. 피신고자인 공공기관의 감독을 받는「공직자윤리법」제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직유관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 거나 근무하였던 자
  - 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, 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
    - 가. 피신고자인 기업, 법인과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기업, 법인
    - 나. 피신고자인 기업, 법인과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배·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, 법인
  - 4. 그 밖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, 기업, 법인, 단체 등의 지도 또는 관리·감독을 받는 자로서 공익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인 공공기관, 기업, 법인, 단체 등으로부터 불이익조치를 받을 수 있는 자

[본조신설 2016. 1. 22.]

- 제4조(정책 수립·시행 등) ① 국민권익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1. 22.>
  -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행정기관, 단체, 기업 등(이하 "행정기관등"이라한다)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
  -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  - ④ 위원회는 행정기관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추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  - ⑤ 위원회는 행정기관등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
- 제4조의2(실태조사 등) ① 위원회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.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- 1. 공익신고의 접수・처리 현황
- 2.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 등 및 특별보호조치결정 등의 이행 현황
- 3. 다른 법령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, 포상금 또는 구조금 현황
- 4. 공익신고의 처리와 관련된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 현황
- 5.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관련 교육 홍보 현황
- 6.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항
-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따라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 3일 전까지 조사일시, 조사목적, 조사장소 및 실태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### 제2장 공익신고

- **제5조(공익신고 기관 등)** ① 법 제6조제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 - 1. 국회의원
  - 2.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 · 공단 등의 공공단체
  - ② 국회의원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단체(이하 "국회의원등"이라 한다)는 공익신고를 받으면 법 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보내야 한다. 다만, 공익신고가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를 보내지 아니할 수 있다.
  - ③ 국회의원등은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(보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)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**제6조(대표자 등의 공익신고 처리 등)** ① 법 제6조제1호에 따라 공익신고를 받은 대표자 또는 사용자(이하 "대표자등 "이라 한다)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, 필요한 경우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② 대표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- ③ 대표자등은 공익신고자가 요구하거나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익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보낼 수 있다. 다만, 공익신고가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내지 아니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- ④ 대표자등은 제1항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.
- **제6조의2(변호사 조력 비용의 지급절차 등)** ①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조력 비용을 지급받으려는 변호사는 같은 항각 호의 조력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비용 지급신청을 해야 한다.
  -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비용 지급신청을 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비용 지급 여부, 지급항목 및 지급금액 등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.
  -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용의 지급기준,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

[본조신설 2024. 7. 30.]

**제6조의3(변호사 조력 비용의 환수 기준 및 절차 등)** ① 위원회는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(이하 "환수비용"이라 한다)을 환수해야 한다.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산정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- 한 이자를 붙여 환수해야 한다.
- 1. 법 제8조의3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: 지급한 비용 전부
- 2. 법 제8조의3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: 중복 지급한 비용 전부
- 3. 법 제8조의3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: 잘못 지급한 비용 전부
- ② 위원회는 법 제8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비용을 지급받은 변호 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. 이 경우 납부기한은 환수처분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으로 한 다.
- 1. 환수 사유
- 2. 환수비용
- 3. 이자
- 4. 환수금액(환수비용과 이자의 합산액을 말한다. 이하 같다)
- 5. 납부기한
- 6. 납부기관
- 7. 납부방법
-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람은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액을 납부기관에 납부해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,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그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.
- ④ 법 제8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"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환수비용에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.
- ⑤ 제4항에 따른 이자의 계산기간은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환수처분의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. 다만, 환수대상자가 환수처분의 통지 전에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환수비용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의 계산기간은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환수비용을 모두 반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.

[본조신설 2024. 7. 30.]

- 제7조(공익신고 내용의 확인) ①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의 내용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. 이 경우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봉인·보관하는 자료를 공익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열람하여 확인해서는 안 된다. <개정 2018. 10. 16., 2021. 10. 19.>
  - 1. 공익신고자(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 신고를 대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변호사를 포함한다)의 이름・주민등록번호・주소・직업・근무처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
  - 2. 공익신고의 경위·취지 및 이유
  - 3. 공익신고 내용과 공익침해행위의 관계
  - 4. 공익신고자와 피신고자의 관계
  - 5. 공익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
  - 6. 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하기 전에 법 제6조제2호에 따른 조사기관(이하 "조사기관"이라 한다) 등 다른 기관에 동일 한 내용으로 공익신고를 하였는지 여부
  - 7. 공익신고자가 위원회의 확인 및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(이하 "조사기관등"이라 한다)의 조사・수사 과정 등에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(이하 "신분공개"라 한다)에 동의하는지 여부
  - ② 위원회는 제1항제7호에 따라 신분공개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관등의 처리 절차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.
- 제8조(위원회의 공익신고 처리)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내용을 확인하여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등에 이첩 또는 송부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종결 처리해야 한다. <개정 2021. 10. 19.>
  - ② 위원회는 공익신고 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.

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③ 삭제<2021. 10. 19.> [제목개정 2021. 10. 19.]
- 제9조(공익신고의 이첩) ① 위원회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등에 공익신고를 이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.
  - 1. 지도・감독・규제 또는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: 조사기관
  - 2.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: 수사기관
  - ② 위원회는 공익신고 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관기관과 관련 기관은 공익신고가 한꺼번에 처리되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.
  - ③ 위원회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공익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함께 이첩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이첩하지 아니한다.<개정 2018. 10. 16.>
  - 1.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
  - 2.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게 하는 경우(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봉인·보관하는 자료
- 제10조(공익신고의 송부)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를 받은 사항이 이첩 또는 종결 처리의 대상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로서 조사기관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이를 조사기관등에 송부할 수 있다.
  - ② 위원회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공익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함께 송부해야 한다. 다만, 제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송부하지 않는다.

[전문개정 2021. 10. 19.]

- 제11조(조사기관등의 공익신고 처리)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조사기관등은 그 공익신고를 다른 조사기관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조사기관등에 다시 이첩 또는 송부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10. 19.>
  -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거나 제1항에 따라 다른 조사기관등으로부터 공익신고를 다시 이첩 또는 송부받은 조사기관등은 조사·수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.<개정 2021, 10, 19.>
  -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해야 한다.<개정 2021. 10. 19.>
  - 1.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 등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결과 및 처리 경위와 이유
  - 2. 조사 수사 종료 후 처리 방향
  - 3. 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 우 그 사실
  - 4.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
  - 5. 그 밖에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공익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
  - ④ 위원회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등으로 이첩 또는 송부한 공익신고의 처리 상황에 대한 자료를 조사기관등에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조사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처리 상황을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.<개정 2021. 10. 19.>

[제목개정 2021. 10. 19.]

제11조의2(의견제시) 위원회는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제시의 내용 및 의견제시에 대한 처리 결과의 회신기한 등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. <개정 2021. 10. 19.>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

- 제11조의3(이의신청 및 재조사ㆍ재수사 요구 등) ① 공익신고자는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의 요지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를 적고 관련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. <개정 2021. 10. 19.>
  - ② 위원회는 법 제9조제8항에 따라 조사기관등에 재조사・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해야 한다.<개정 2021. 10. 19.>
  - 1. 조사기관등의 조사・수사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: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
  - 2.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공익신고자의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: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
  -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제2호에 따라 재조사ㆍ재수사를 요구하였는 지 여부 등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6. 1. 22.]

- 제11조의4(보호・지원 안내)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・지원 안내 대상자는 공익신고자등으로 한다. 다만,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안내 대상자에 공익신고자등의 친족 또는 동거인을 포함한다. <개정 2021, 10, 19,>
  - ② 조사기관등, 위원회 및 제5조제1항제2호의 공공단체(이하 이 조에서 "공익신고기관"이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에 제1항에 따른 안내 대상자에게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.<개정 2024. 7. 30.>
  - 1. 조사기관등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
    - 가. 법 제8조에 따른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
    - 나.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조치를 취한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할 때
    - 다.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관할 조사기관등에 이송한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할 때
  - 2. 위원회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
    - 가. 법 제8조에 따른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
    - 나.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등에 이첩 또는 송부한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할 때
    - 다. 법 제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조사기관등의 조사・수사 결과의 요지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거나 같은 조 제9항 후단에 따라 공익신고자에게 조사기관등의 재조사・재수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할 때
    - 라.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(이하 "보호조치"라 한다)를 신청한 사람에게 법 제 1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 하거나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할 때
  - 3. 제5조제1항제2호의 공공단체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
    - 가. 법 제8조에 따른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
    - 나. 제5조제3항에 따라 조치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할 때
  - ③ 삭제<2021. 10. 19.>
  - ④ 공익신고기관은 제2항에 따른 안내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로 해야 한다. 다만, 안내 대상자
  - 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안내할 수 있다.<개정 2021, 10, 19,, 2024, 7, 30,>
  - ⑤ 공익신고기관은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<개정 2024. 7. 30.>

[본조신설 2017. 10. 17.]

- 제12조(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) 법 제10조제2항제7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  - 1. 신고 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

- 2.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
- 3. 다른 법령 또는 그 위임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경우
- 제12조의2(공익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) ① 위원회는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6조 각 호의 기관에 자료·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·정보의 범위, 보유·이용 목적 및 제공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.
  - ② 위원회는 법 제6조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·정보 중 보완이 필요하면 그 자료·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장에게 자료·정보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.

#### 제3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

- 제13조(공익신고자등의 신분 비밀보장) 대표자등, 위원회, 조사기관등 및 국회의원등은 공익신고의 접수・이첩・송부・조사 및 수사 등의 과정에서 공익신고자등의 신분이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- 제14조(신변보호조치) ①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(이하 "신변보호조치"라 한다)를 요구하는 자는 요구자와 신변보호가 필요한 대상자(이하 "보호대상자"라 한다)의 인적사항 및 요구 사유 등을 적은 문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지체 없이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② 보호대상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급박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
  - ③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변보호조치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「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」제7조에 따른 신변안전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고, 신변보호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  - ④ 경찰관서의 장은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신변보호조 치를 해제할 수 있다.
  -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결정과 제4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해제 사실 및 신변호보조치 기간이 종료된 사실을 요구자와 보호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.
- 제15조(보호조치의 신청 및 조사) ① 공익신고자등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, 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등을 적은 문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21. 10. 19.>
  - ② 위원회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법 제1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일 7일 전까지 출석 일시 및 장소 등을 기재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목적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문서로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 - ③ 삭제<2018. 4. 30.>
- 제16조(보호조치결정 등) ① 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 권고(이하 "보호조치결정등"이라 한다)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.
  - ②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등에 따라 불이익조치를 받은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지도·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.
  - ③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등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직(轉職) 등 보호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을 공익신고자등이 소속된 기관의 장 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.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④ 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권고 사실을 보호조치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제17조(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 기준 등) ①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수 등은 「소득세법」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하고, 이자는 「근로기준법」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로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보수 및 이자의 산정기간은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(滯拂)된 날부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일까지로 한다.
  - ③ 위원회는 제1항의 보수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·단체 또는 기업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- 제17조의2(보호조치결정의 이행 점검) 위원회는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해당 보호조치결정 이후 2년 동안 6개월마다 불이익조치를 한 자(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소속된 기관・단체・기업 등을 포함한다) 및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보호조치 이행 여부 및 추가적인 불이익조치의 발생 여부를 점검・확인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8. 4. 30.]

[종전 제17조의2는 제17조의3으로 이동 <2018. 4. 30.>]

제17조의3(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) 법 제21조의2제1항(제20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이행강 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.

[본조신설 2016. 1. 22.]

[제17조의2에서 이동 <2018. 4. 30.>]

- **제18조(불이익조치 금지)** ① 공익신고자등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, 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등을 적은 문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22조제 4항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.
  -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를 한 경우에는 그 권고가 이행될 수 있도록 불이익조치를 하려는 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하려는 자에 대한 지도·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 다. 이 경우 위원회는 권고 사실을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제19조(조치결과 등의 통보) 위원회로부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,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권고,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를 받은 자는 요구・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 결과 또는 조치를 하지 못한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20조(협조 요청) 위원회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,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,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10. 19.>
  - 1.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또는 설명
  - 2. 출석 및 의견 진술
  - 3. 소속 직원의 파견·공동조사 및 자문
  - 4. 공익신고자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질병 치료와 건강 관리를 위한 의료지원
  - 5. 법률 상담 자문 및 소송의 대리 등 피해 회복 및 권리 구제를 위한 법률구조
  - 6.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취업 지원
  - 7. 그 밖에 공익신고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제20조의2(정치 운동 등의 지시에 대한 이의제기)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공무원등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(이하 이 조에서 "정치운동등"이라 한다)를 지시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.
  - 1. 정치운동등의 지시를 한 사람

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

- 2. 제1호에 따른 사람이 소속된 기관의 장
-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는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으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구술로 이의제기를 한 후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따른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.
- 1. 이의제기를 한 사람의 이름, 소속, 직위 등 인적사항
- 2. 정치운동등의 지시를 한 사람의 이름, 소속, 직위 등 인적사항
- 3. 정치운동등의 지시를 한 일시 및 장소
- 4. 정치운동등의 지시 내용
- 5. 이의제기의 취지와 이유
- ④ 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사람은 이의제기가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의제기 내용에 따라 즉시 시정하고 이를 이의제기를 한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, 이의제기가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 우에는 그 사실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이의제기를 한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4. 4. 8.]

제4장 보상금, 포상금 및 구조금 <개정 2016. 1. 22.>

제21조(보상금의 지급사유)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이나 판결을 말한다. <개정 2021. 10. 19.>

- 1.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
- 2.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
- 3.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
- 4.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

[제목개정 2021. 10. 19.]

- 제22조(보상금의 산정기준) ① 법 제26조의2 본문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, 공익침해행위의 조사 또는 수사 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(공직자였던 자를 포함한다)가 그 조사 또는 수사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6. 1. 22, 2023. 6. 13, 2024. 7. 30.>
  - 1.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
  - 2. 신고한 공익침해행위가 신문 방송 등 언론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
  - 3.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
  - 4.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 제거 및 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
  - 5. 내부 공익신고자가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하였는지 여부
  - ②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않는다.<개정 2016. 1. 22., 2018. 4. 30., 2024. 7. 30.>
  - ③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<개정 2014. 9. 2., 2023. 12. 19.>
  - ④ 삭제 < 2023. 12. 19.>
- 제23조(보상금의 지급결정) ① 위원회는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69조에 따른 보 상심의위원회(이하 "보상심의위원회"라 한다)가 심의·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보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 하고,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서 정본(正本) 및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.
  - ② 위원회는 법 제26조의2 단서에 따라 보상금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금액이나 그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 지급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상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.<개정 2024. 7. 30.>

- ③ 삭제<2024. 7. 30.> [제목개정 2024. 7. 30.]
- 제24조(공익신고의 경합 시의 보상금 결정) ①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공익신고를 하여 공익신고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보상금을 신청하는 경우 제22조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할 때와 제23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이를 하나의 공익신고로 본다. <개정 2023. 12. 19.>
  -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의 경우 각각의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에 이바지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배분한다. 이 경우 제 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감액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익신고자별로 감액사유를 고려하여 결정한다.<개정 2016. 1. 22., 2023. 12. 19.>

[제목개정 2023. 12. 19.]

- 제25조(보상금의 지급시기) ① 보상금은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의 절차에 따라 공공기 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. 이 경우 그 부과 등에 대한 이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불복 구제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그 기간 및 절차가 끝난 후에 지급한다. <개정 2023. 6. 13., 2023. 12. 19.>
 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6조의2 단서 및 이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의 일부만 우선 지급하도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라 지급한다.<신설 2023. 12. 19., 2024. 7. 30.>
- **제25조의2(포상금의 지급사유)** 법 제26조의3제1항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21. 10. 19., 2024. 7. 30.>
  - 1. 과태료, 과징금, 부담금 또는 가산금 등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
  - 2.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

[본조신설 2016. 1. 22.]

- **제25조의3(포상금의 지급기준 등)** ①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포상금(이하 "포상금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한다. 이 경우 지급한도액은 5억원으로 한다. <개정 2021. 10. 19., 2023. 12. 19., 2024. 7. 30.>
  - 1. 법 제26조의3제1항제1호: 기소유예, 형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여부, 형의 종류 및 경중
  - 2. 법 제26조의3제1항제2호: 행정처분의 내용, 행정처분을 받은 자의 수 또는 행정처분의 기간
  - 3. 법 제26조의3제1항제3호: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의 내용・기여 정도 또는 공익 증진 정도
  - 4. 제25조의2제1호: 과태료, 과징금, 부담금 또는 가산금 등의 부과금액
  - 5. 제25조의2제2호: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의 내용 또는 공익 증진 정도
  - ②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, 공익침해행위의 조사·수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그 조사 또는 수사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  - 1.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
  - 2. 신고한 공익침해행위가 신문 방송 등 언론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
  - 3.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
  - 4.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 제거 및 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
  - 5. 공익신고자가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하였는지 여부
  - ③ 위원회는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 중에서 법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조에 해당하는 자 또는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위원회의 직권으로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.<개정 2023. 6. 13., 2024. 7. 30.>

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·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고, 포상금 지급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서 정본 및 결정통지서를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.
- ⑤ 삭제<2023. 12. 19.>

- 제26조(구조금 산정 기준) ① 보상심의위원회 또는 위원회는 법 제27조제2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호의 구조금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. <개정 2018. 4. 30., 2021. 10. 19.>
  - 1. 육체적・정신적 치료를 위하여 진찰・입원・투약・수술 등에 소요된 비용
  - 2. 전직・파견근무・신변보호 등으로 인한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
  - 3.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쟁송을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 노무사 등의 수임료
  - 4.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(이하 "월평균액"이라 한다). 다만, 월 평균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월평균액이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
  - 5. 그 밖에 보상심의위원회가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는 금액
  - ② 월평균액은 평균임금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고,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금 손실액의 산정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.
  - ③ 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평균임금은 매년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공신력 있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.<개정 2021. 10. 19.>
  - ④ 공익신고자 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구조금을 신청한 사람이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.<개정 2023. 6. 13.>
  - ⑤ 삭제 < 2023. 12. 19.>
- 제27조(구조금의 지급 결정) ① 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 · 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구조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구조금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우선 지급한 후 보상심의위원회가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의 · 의결한다. <개정 2018. 4. 30., 2023. 6. 13.>
  - ②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.
  -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구조금의 지급 여부 또는 지급금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 결정서 정본 및 결정통지서를 구조금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.<개정 2023. 6. 13.>
  - ④ 위원회는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우선 지급된 구조금의 액수가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· 의결을 거쳐 결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에게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.<신설 2023. 6. 13.>
- 제27조의2(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의 절차)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에게 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신속히 결정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4. 9. 2.]

- 제27조의3(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) 위원회는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위원회가 관계 전산망을 이용하여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청할 때에는 문서(전자 문서를 포함한다)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해야 한다. 이 경우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.
  - 1.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피해원인제공자의 인적사항
  - 2. 사용 목적
  - 3. 제공이나 확인을 요청하는 자료의 목록

[본조신설 2024. 7. 30.]

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

- 제28조(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) ① 위원회는 법 제28조에 따른 보상금 및 구조금의 중복 지급 금지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  -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을 위하여 행정기관등에 보상금·포상금 및 구조금 지급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  - ③ 위원회는 행정기관등이 제1항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.
- 제28조의2(보상금 등의 지급절차 등)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, 포상금 또는 구조금의 지급기준,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

[본조신설 2023. 12. 19.]

#### 제5장 보칙

- 제29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①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8조에 따른 공익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(이하 이 조에서 "주민등록번호등"이라 한다)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  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1. 22., 2018. 10. 16., 2024. 7. 30.>
  - 1. 법 제8조,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 공익신고 내용의 접수・확인・이첩 등에 관한 사무
  - 2. 법 제12조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에 관한 사무
  - 3.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에 관한 사무
  - 4. 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에 관한 사무
  - 5. 법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무
  - 6. 법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에 관한 사무
  - 7. 법 제26조에 따른 보상금에 관한 사무

7의2. 법 제26조의3에 따른 포상금에 관한 사무

- 8. 법 제27조에 따른 구조금에 관한 사무
- ③ 법 제9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은 법 제10조에 따른 공익신고의 처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4. 4. 8.]

**제30조(과태료의 부과ㆍ징수)**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. <개정 2016. 1. 22.>

부칙 <제34783호,2024. 7. 30.>

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

■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[별표 1] 삭제 <2016.1.22.>

## ■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[별표 1의2] <개정 2018. 10. 16.>

##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(제17조의3 관련)

### 1. 일반기준

구체적인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부과금액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동기, 고의·과실 등 귀책 정도, 보호조치결정의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,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. 다만,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을 기준으로 한다.

# 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금액
가. 법 제20조제1항제1호(법 제20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	
우를 포함한다)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	
익조치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는 위원회의	
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
1) 법 제2조제6호가목의 불이익조치	1,500만원 이상
	3,000만원 이하
2) 법 제2조제6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	1,000만원 이상
	2,000만원 이하
3) 법 제2조제6호라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불이익조치	200만원 이상 2,000만원 이하
나. 법 제20조제1항제2호(법 제20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	200만원 이상
우를 포함한다)에 따라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(이자	2,000만원 이하
를 포함한다)의 지급을 하도록 요구하는 위원회의 보호조치	
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
다. 법 제20조제1항제3호(법 제20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	200만원 이상
우를 포함한다)에 따라 그 밖의 불이익조치의 취소 또는 금	2,000만원 이하
지를 하도록 요구하는 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	
않은 경우	

## ■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[별표 2] <개정 2023. 12. 19.>

## 보상금의 산정기준(제22조제1항 관련)

보상대상가액	산정기준
1억원 이하	보상대상가액의 30%
1억원 초과 5억원 이하	3천만원 + 1억원 초과금액의 20%
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	1억1천만원 + 5억원 초과금액의 14%
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	3억2천만원 + 20억원 초과금액의 8%
40억원 초과	4억8천만원 + 40억원 초과금액의 4%

비고: "보상대상가액"이란 법 제26조제1항 및 이 영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.

## ■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[별표 3] <개정 2021. 10. 19.>

## 과태료의 부과기준(제30조 관련)

### 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은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- 다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을 기준으로 한다.
- 라. 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 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1)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2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경미하여 위원회의 업무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
- 4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### 2. 개별기준

<u> </u>				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1차	금액(단 <sup>5</sup> 2차	위: 만원)   3차이상
가.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(법	법 제31조제1			
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	ठि			
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				
자료 제출, 출석, 진술서의 제				
출을 거부한 경우				
1) 불이익조치를 한 자		500	1,000	2,000
2) 참고인		200	400	800

<u>3) 신청인</u> 나. 관계 기관·단체 또는 기업이	법 제31조제1	100	200 700	300 1,000
법 제19조제2항(법 제22조제3	항		.00	1,000
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	S			
한다)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				
거부한 경우				
다.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	법 제31조제2			
준용되는 법 제21조제1항에	<u>ૅ</u> ંઠો-			
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				
정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				
라 확정된 다음 각 호의 어느				
하나에 해당하는 법 제20조의				
2에 따른 특별보호조치결정을				
이행하지 않은 경우 1)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				
준용되는 법 제20조제1항제1				
호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				
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에				
대한 원상회복 조치를 취하				
도록 요구하는 위원회의 특				
별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				
않은 경우 가) 법 제2조제6호가목의 불			2,000	
이익조치 나) 법 제2조제6호나목 또는			1,000	
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				
하는 불이익조치 다) 법 제2조제6호라목부터			500	
사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				
하는 불이익조치			500	
2)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			500	
준용되는 법 제20조제1항제2				
호에 따라 차별 지급되거나				
체불된 보수 등(이자를 포함				

한다)의 지급을 취하도록 요	
구하는 위원회의 특별보호조	
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	
우 3)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	500
준용되는 법 제20조제1항제3	
호에 따라 그 밖의 불이익조	
치의 취소 또는 금지를 취하	
도록 요구하는 위원회의 특	
별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	
않은 경우	